

의안번호	제2968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7.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68호
----------	--------

제출연월일: 2025. 7. 4.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60조)

- 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기준 반영

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안 별지)

- (현행) 장애자 → (개정) 장애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2093호(2025. 3. 27.)]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642호
 - 가) 예고기간: 2025. 3. 31. ~ 4. 21.(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1. 50만원 초과 : 1년 2회 이내 분납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u> <u><신 설></u> 2. <u>50만원</u>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 4. (생 략) ② (생 략)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 <u>50만원</u> 초과 : 1년 2회 이내 <u>분납</u> 2. <u>100만원</u> -----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지 방 청 사 · 종 합 회 관 의 표 준 설 계 면 적 기 준 (제46조 관련)

4. 보건소

(단위: m²)

구분		실 명	군보건소 면적기준	
진 료 활 동	a	접수 / 수납	13.86	비 고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36.00	
		약국조제실	11.88	
		약국창고	11.88	
		일반진찰실	35.64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6조관련)

4. 보건소

(단위: m²)

구분		실 명	군보건소 면적기준	
진 료 활 동	a	접수 / 수납	13.86	비 고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36.00	
		약국조제실	11.88	
		약국창고	11.88	
		일반진찰실	35.64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4.8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재무과장 오 은 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